

花村美樹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 *

장 경 준 **

-
- | | |
|-------------------------------|-------------------------|
| 1. 머리말 | 3. 초고본을 통해 본 교정본의 작성 과정 |
| 2.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와 하나님라
요시키 | 4. 교정본의 내용 검토
5. 맺음말 |
-

초록: 이 글은 그동안 학계에서 널리 이용하여 온 조선총독부중추원 간행 『校訂 大明律直解』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대명률직해는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을 1395년에 조선에서 이두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으로, 현재 16세기 이후의 중간본 30여 가지가 남아 있다. 일제 시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고법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당시 경성제국대학 교수 하나님라에게 위촉하여 대명률직해의 이본 5가지와 주석서 3가지를 대교하고 교감한 『교정 대명률직해』를 1936년에 간행하였고, 이 책은 그동안 대명률직해의 定本 역할을 하여 왔다.

『교정 대명률직해』를 검토한 결과,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대교 작업 가운데 탁족암본의 대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정본의 저본으로 홍문관본을 택한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 교감 기록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은 점 등은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이본 가운데 하나님라가 보지 못한 진주판 계통이 있어 대교 작업을 새로이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교정 대명률직해』는 더 이상 정본 텍스트라고 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책의 훌륭한 부분은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정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조선총독부중추원(朝鮮總督府中樞院), 하나님라 요시키(花村
美樹), 대교(對校), 교감(校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 S1A5A2A01018470). 이 글의 작성 과정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강해은, 손정엽, 진윤정, 허인영 군이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머리말

조선은 1392년 건국 초기부터 범치주의를 표방하고 법전 정비에 힘을 쏟았다. 한편으로 당시 최고 수준이던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을 이두(吏讀)로 번역하여 1395년 간행하였고, 한편으로 고려시대 법령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1397년 『經濟六典』을 공포하였다. 대명률의 이두 번역은 조선에서 형사 사건의 처리에 대명률을 적용하기로 한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¹⁾ 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실무자에게 대명률의 난해한 내용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당시 관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이두로 번역서를 만들었던 것이다.²⁾ 이것을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라 부른다.³⁾

대명률직해의 원간본(原刊本)은 현재 전하지 않고 16세기 이후의 중간본(重刊本)만 30여 가지가 남아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전본은 저본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2가지 계통, 형태서지적 차이를 기준으로 6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장경준·진윤정 2014). 그런데 이본(異本)들 사이에는 텍스트의 차이가 있고, 또 각 이본마다 적잖은 오류를 지니고 있어서, 이본들을 면밀히 대교(對校)하고

- 1) 조선 태조는 1392년 즉위교서에서 공사(公私)의 범죄를 처결할 때 반드시 대명률에 의거 할 것을 친명하였고(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기사 참조), 정도전은 1394년 『朝鮮經國典』에서 왕명에 의해 대명률을 방언(方言)으로 번역하고 시행하였음을 밝혔다(현전(憲典) 총서(總序) 참조).
- 2) 대명률의 이두 번역의 필요성은 1395년 2월 작성한 김지(金祇)의 발문에 잘 드러나 있고, 실제 번역한 양상에 대한 소개와 해설은 장경준, 2015 「조선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5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3) 현전하는 대명률직해의 모든 이본은 권두서명이 ‘大明律’이어서 원래 이름에는 ‘直解’가 없었던 듯하다. 다만, 김지의 발문에 ‘축자직해(逐字直解)’였다는 표현이 나오고, 『欵事撮要』(1568)의 책판 목록에 충청도 공주에 ‘直解大明律’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일본 호사문고에 소장된 책의 표제가 ‘直解大明律’로 되어 있다. ‘大明律直解’라는 이름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圖書解題』(1919)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현재 ‘대명률직해’는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한 텍스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텍스트가 포함된 책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책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편의상 ‘『』’ 부호 없이 ‘대명률직해’로 부르기로 한다.

교감(校勘)하여 올바른 텍스트를 제시한 정본(定本)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명률직해의 정본화는 일찍이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 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어 1936년 『校訂 大明律直解』(이하 ‘교정본’이라 부름)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교정본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花村美樹(이하 ‘하나무라’라 부름)⁴⁾가 당시 알려진 대명률직해 이본들과 몇 가지 주석서를 대교하여 만든 것으로서 지금까지 정본의 역할을 하여 왔다.⁵⁾

그러나 교정본이 나온 이후 새로 발견된 대명률직해의 판본만 20가지가 넘어 외적으로 텍스트를 비교해 보아야 할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정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정본의 내용을 검증하거나 논평한 연구는, 직해문의 이두에 대한 교감이 미흡함을 지적한 안병희(1985)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라도 하나무라의 업적을 꼼꼼히 검토하여 그 공과(功過)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 사업과 하나무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2장), 하나무라가 남긴 초고본을 통해 교정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다음(3장), 교정본의 내용에 대해 검토함으로써(4장), 대명률직해의 새로운 정본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고자 한다.

4) 필자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花村美樹’의 독음이 ‘하나무라 미키’인 것으로 기술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 ‘하나무라 요시키(はなむら よしき)’임을 알게 되어 바로잡는다.

5) 1964년 법제처에서 낸 번역본이 교정본의 직해문을 번역한 것이고, 박희숙, 1985 「大明律直解의 更讀研究」(명지대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그동안 대명률직해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들은 대부분 교정본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黃彰健 편저, 1979 『明代律例彙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劉海年·楊一凡 주편, 1994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乙編 第一冊: 洪武法律典籍』, 科學出版社 등 대명률 관련 문헌의 텍스트를 소개하고 비교한 연구에서도 교정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2.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와 하나무라 요시키

일본은 1906년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직후 체계적으로 조선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취조국(取調局; 1910~1912), 참사관실(參事官室; ~1915), 중추원(中樞院; ~1945) 등 담당 부서가 바뀌고 조사의 방향과 내용도 몇 차례 조정되는 곡절을 겪으면서도 조선의 관습, 제도, 언어, 역사, 문화재 등에 관하여 치밀하게 조사 연구하였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냈다.⁶⁾

일제의 조선 고법전 정리는 위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1910년 9월 조선총독부에 설치된 취조국의 조사 항목에 ‘조선에서 행해진 중요 구법전의 번역(朝鮮に行はれた重要舊法典の翻譯)’이 들어감에 따라 『大典會通』의 번역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고법전 자료를 연도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 간행물〉

1919년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및 회통보수(會通補修) 해설제부(題付)
1920년	대전속록(大典續錄) · 후속록(後續錄) · 수교집록(受敎集錄) · 수교신보(受敎新補) 해설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해설 부역실총(賦役實摠) 해설
1921년	역문대전회통(譯文大典會通) 직역 만기요람(萬機要覽) 해설 육전조례(六典條例) 해설 탁지지(度支志) 해설
1922년	추관지(秋官志) 해설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 해설

6) 1938년에는 당시까지 이루어진 조사 사업을 개관한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를 간행하였는데, 이 글에 기술한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 사업도 주로 이 책과 이 사업의 결과물로 발간된 다른 책의 서문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춘관통고(春官通考) 해설
1923년	전록통고(典錄通考) 해설
	양역실총(良役實摠) 해설
1934년	경국대전(經國大典) 교정 · 훈점 (內藤吉之助 교수)
1935년	속대전(續大典) 교정 · 훈점 (內藤吉之助 교수)
	대전속록 · 대전후속록 · 경국대전주해(大典續錄 · 大典後續錄 · 經國大典註解) 교정 · 훈점 (內藤吉之助 교수)
1936년	이조법전고(李朝法典考) 편찬 (중추원총탁 麻生武龜)
	교정대명률직해(校訂大明律直解) 교정 · 훈점 · 해설 (花村美樹 교수)
1937년	교주대전회통(校註大典會通) 교정 · 훈점 · 주석 · 해설 (중추원총탁 5인 공동)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 교정 · 훈점 (四方博 교수)
1938년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교정 · 훈점 (四方博 교수)
1939년	추관지(秋官志) 교정 · 훈점 (花村美樹 교수)
1943년	수교집요(受敎輯要) 교정 · 훈점 (內藤吉之助 교수)

위의 목록을 보면 조선 총독부의 고법전 정리 간행은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차로 1919~1923년에는 주요 고법전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데 주력하였고,⁷⁾ 2차로 1934~1939년에는 주로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담당자로 위촉하여 텍스트를 교정하고 훈점을 다는 등의 연구 성과를 담아냈다.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1938:105)에 따르면, 1933년 조선총독부에서 경성제국대학총장과 고등법원장에게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한 결과, 内藤吉之助(1894년 생, 법제사 전공), 花村美樹(1894년생,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공), 四方博(1900년 생, 경제학 전공) 등 30대의 젊은 교수들이 위촉되어 그해 연말부터 조사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인 하나무라(花村美樹)의 이력과 논저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1919~1923년에 간행한 책 중에 1921년의 『譯文大典會通』 이외의 것은 이 연구에서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주요 이력〉

- 1894년 2월 일본 나가노(長野)현에서 태어남
- 1918년(24세)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법률과 졸업(7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司法官試補)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8월)
- 1920년(26세) 경성지방법원판사(5월)
경성전수학교(專修學校) 강사축탁(10월)
- 1922년(28세) 경성복심법원판사(12월)
- 1923년(29세) 행정강습소 강사축탁(2월)
조선총독부사무관 - 범무국 근무(7월)
- 1924년(30세) 경성제국대학예과 강사축탁(5월)
경성복심법원판사(12월)
- 1925년(31세) 조선총독부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3월)
- 1926년(32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4월): 1945년 폐교될 때까지 재직함(형법, 형사소송법 강좌 담당)
- 1941년(47세) 적산관리법(敵產管理法)에 의해 ‘在日本プレスピテリアン宣教師社団’ 소유 재산의 법정관리인이 됨
- 1943년(49세)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 이사
- 1945년(51세) 일본 폐전 및 경성제국대학 폐교 후 일본 귀환 추정
아이치대학(愛知大學) 교수: 부임 시기는 불확실. 1950~1968년 재직 확인됨

〈논저 목록〉

- 1924년 「朝鮮戶籍令施行手續解說」(宮本元 著, 「朝鮮戶籍法令釋義」, 朝鮮總督府 法務事務局 編, 京城: 朝鮮司法協會에 편집됨)
- 1925년 “朝鮮法制史”(「朝鮮史講座」, 朝鮮史學會)
- 1927년 “公選の投票に關する罪に就て”(「朝鮮」 제141호)
- 1930년 “中華民國國民政府の司法制度並に刑事法規(一,二,三)”(「司法協會雜誌」 9-6,7,8)
- 1932년 “經濟六典について”(「法學論纂」,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第一部論集 第五冊)
“李朝に於ける刑罰の理論”(「治刑」 10-10)
- 1933년 “殺害後の財物の奪取について: 宮本元判事の反駁に對する反駁”(「司法協會雜誌」 第12卷 第8號)
- 1934년 “祠院特に濟州三姓祠について”(小田先生頌壽記念會 編,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京城: 大阪屋号書店)

1936년	“大明律直解攷(一,二)”(「法學協會雜誌」54-1,2) 「校訂 大明律直解」(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37년	“高麗律”(「朝鮮社會法制史研究」, 岩波書店)
1938년	“親族に對する犯罪”(小野清一郎 編, 「牧野教授還暦祝賀刑事論集」, 東京: 有斐閣)
1939년	「秋官志」(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42년	“前間恭作大人のことこども”(書物同好會 編, 「書物同好會會報」15, 京城: 大成書林)
	“賊盜處斷例攷1, 2”(「法學會論集」第13冊 第4號)
1943년	“賊盜處斷例”(佐伯千仞 編, 「現代刑事法學の諸問題: 宮本博士還暦祝賀」, 東京: 弘文堂書房)
	“新中國の司法制度”(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大陸文化研究(續)」, 東京: 岩波書店)
1953년	“逃走罪”(日本刑法學會 編, 「刑事法講座」第7卷 補卷 (刑法 第5), 東京: 有斐閣)
1968년	“一人償命”(「朝鮮學報」48, 朝鮮學會)

하나무라는 1918년 대학 졸업 직후 조선에 건너온 다음 경성지방법원 판사와 조선총독부 사무관을 거쳐 경성제국대학이 존재한 1926~1945년 내내 범문학부 교수를 지냈다. 전공 분야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고, 조선 법제사에도 관심을 보여 ‘조선법제사(朝鮮法制史)’(1925), ‘경제육전에 관하여(經濟六典について)’(1932), ‘대명률직해고(大明律直解攷)’(1936), ‘고려율(高麗律)’(1937)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933년에 조선총독부 위촉으로 대명률직해와 추관지의 교정 및 훈점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1936년에 발표한 논문 ‘대명률직해고’는 그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여 같은 해 간행한 교정본의 해설로 실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간행한 대명률직해 교정본은 하나무라가 40대 초반이던 1934~1935년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교정본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초고본을 통해 본 교정본의 작성 과정

하나무라는 조선총독부의 위촉으로 대명률직해의 교정 작업을 진행한 1934~1935년 사이에 이본들을 조사 연구한 기록을 담은 선장(線裝) 형식의 초고본 6책을 넘겼다.⁸⁾ 각 책의 서지사항을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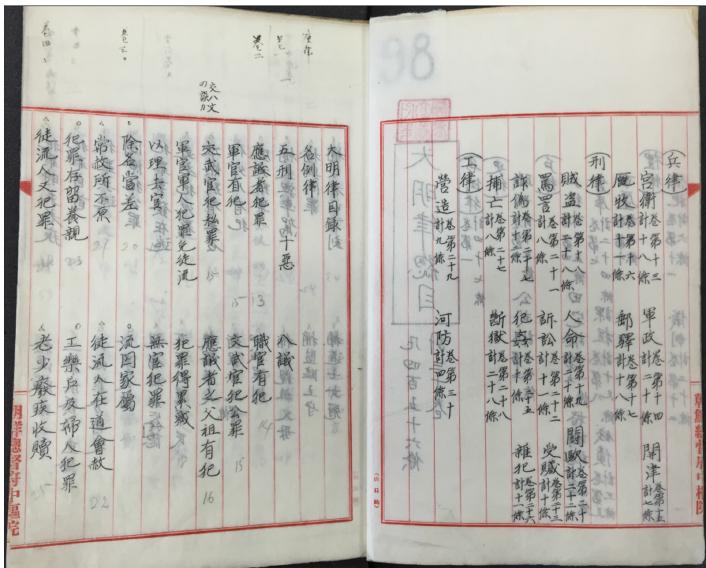
〈표 1〉 하나무라 초고본의 서지사항

	형태서지	표제	비고
제1책	이침안정, 총 11장(표지 제외), 닥종이에 붉은 색으로 광곽·판심·계선 인쇄(사주쌍변, 반파 16*20.5cm, 유계 12행, 판심 위쪽 하향어미, 아래쪽은 어미 없이 백구에 '朝鮮總督府中樞院')	大明律總目	총목과 각 책의 목록 부분만 필사함.
제2책	사침안정, 총 63장(표지 제외), 닥종이에 광곽·판심·계선이 없음.	大明律 卷一	제1책에 있는 총목, 목차 포함하여 권3까지 필사함.
제3책	사침안정, 총 48장(표지 제외), 닥종이에 광곽·판심·계선이 없음.	大明律 卷第四至第十	원래 하나의 책으로 묶었던 것을 둘로 분리하면서 원표지는 제4책의 표지로 하고, 제3책은 표지를 새로 하였음.
제4책	사침안정, 총 32장(표지 제외), 닥종이에 광곽·판심·계선이 없음.	大明律 卷第四至第拾四 (앞 '四'자를 펜으로 '十一'로 수정)	권12의 5, 6장은 제1책에서 사용한 형식의 종이에다 내각문고본을 보고 연필로 써서 보충하였음.

8) 이 책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규장각 도서번호 26760). 이 책에 대해 안병희, 1985 「대명률직해 이두의 연구」, 『규장각』 9에서는 "對校는 校訂本과 그 原稿本에 행하여져 있는데, 原稿本이 더 세밀하다"(2면), "校訂本의 原稿本도 이러한 對校가 더 자세할 뿐이다"(16면)라고 짤막하게 언급하였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엮음, 2001 『규장각 소장 어문학자료 어학편 해설』, 서울대학교 규장각, 84면에서도 "<奎26760>은 1936년에 朝鮮總督府 中樞院에서 弘文館本을 저본으로 하고 여러 異本들을 對校하여 신식활자로 간행한 《校訂大明律直解》의 원고본이다. 먹지를 대고 등사한 것으로 목록 1책을 포함하여 6책으로 장정되어 있다. 간행된 《校訂大明律直解》보다 對校가 좀더 자세하다."(권용경)라고만 기술되어 있다. 후자의 기술 가운데 '먹지를 대고 등사한 것'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책의 내용은 원고지 또는 백지에다 직접 써넣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을 '원고본'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책과 교정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차이 나는 부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아마도 출판용 원고본이 별도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이 책을 잠정적으로 '하나무라 초고본(草稿本)'(줄여서 '초고본')이라 부르기로 한다.

제5책	사침안정, 총 71장(표지 제외), 닥종이 에 광곽·판심·계선이 없음.	大明律 卷第拾五至第貳拾貳	제3책, 제4책, 제5책의 본문을 한 사람이 필사함.
제6책	사침안정, 총 50장(표지 제외), 닥종이 에 광곽·판심·계선이 없음.	大明律 卷第貳拾參至第參拾	제1책, 제2책, 제6책의 본문을 한 사람이 필사함.

초고본 6책 가운데 제1책과 나머지 책들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제1책은 붉은색으로 광곽·판심·계선을 표시하고 아래 백구에 ‘朝鮮總督府中樞院’이라 인쇄한 종이를 사용하였는데, 이 종이는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진행한 고법전 정리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원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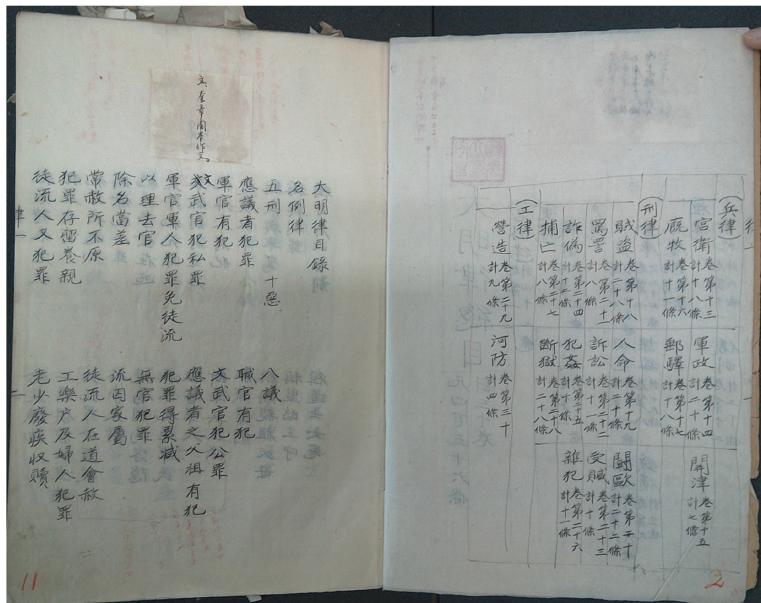


<그림 1> 초고본 제1책의 1장 뒷면과 2장 앞면

그런데 제2책부터 제6책까지는 인쇄된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백지에 모든 내용을 기록하였다(<그림 2> 참조).¹⁰⁾ 또한 제2책 앞부분에는 제1책에 있는 내용인

9) 만약 대명률직해 전용의 원고지였다면 한 면에 10행이 되도록 만들었을 텐데 이 종이는 12행으로 되어 있다.

총목과 목차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베껴 적었다. 여백에 기록한 내용도 제1책은 이본의 대교 및 교감에 관한 것보다 대명률과 당률(唐律)을 비교한 것이 많다.¹¹⁾ 따라서 교정본과 초고본의 내용을 비교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2책부터 검토하면 된다.



〈그림 2〉 초고본 제2책의 1장 뒷면과 2장 앞면

초고본은 백지에다 규장각본을 베껴 본문으로 삼은 것으로서,¹²⁾ 하나무라는 이를 가지고 다니며 이본을 조사한 결과를 여백에 기록해 놓았다. 본문에 베낀 책

10) 그런데 백지에 기록한 본문도 형식은 제1책의 원고지와 같은 12행으로 하였다. 이 또한 초고본이 출판을 전제한 원고본이 아니라 단지 조사한 기록을 적기 위한 용도였음을 보여준다.

11) 교정본의 두주(頭註)에 기록된 내용도 초고본 제1책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제2책에 있다.

12) 규장각본을 베끼는 작업은 두 사람이 나누어 맡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필체가 제1, 2, 6책과 제3, 4, 5책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본문의 필체는 하나무라가 여백에 기록한 필체와 다른 것으로 보아 당시 경성제대 또는 중추원에 소속된 조수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규장각본이었음은 각 책의 끝에 “丙寅十月 日平安監營開刊”이라는 간기까지 필사한 사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³⁾ 그리고 하나무라는 새로운 이본을 조사할 때 필기구를 바꿔 기록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게 하였고, 우리는 이를 통해 교정본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초고본 제2책에 있는 다음 사례를 보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내각문고본에 ‘史’로 되어 있는 것이 규장각본은 ‘吏’로 잘못 새겨져 있다. 따라서 규장각본을 베낀 초고본의 본문도 ‘吏’로 필사되어 있다(가운데 그림).¹⁴⁾

내각문고본	초고본	교정본
규장각본	초고본	교정본

<그림 3> 권1 명례율 범죄득누감(犯罪得累減)조 (영인본 1:14ㄷ:3)

13) 현전하는 대명률직해의 이본 중에 간기를 새겨넣은 것은 평양판이 유일하며, 하나무라가 대교한 책 중에서는 규장각본이 평양판에 속한다.

14) 이 글에서 용례의 출전 표시는 예컨대 <그림 3>에서 ‘권1 제14장 뒷면 3행’은 ‘1:14ㄷ:3’과 같이 하기로 한다.

하나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초고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 (1) 조수가 베낀 본문의 ‘吏’가 잘못임을 발견하고, 본문 위의 여백에 연한 펜으로 “吏ハ史ノ誤ナラン”(吏는 史의 잘못일 것이다)라고 적었다.
- (2) 홍문관본을 대교한 결과 예상대로 ‘吏’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붉은색 펜으로 본문의 ‘吏’를 ‘吏’로 교정한 다음 (1)의 기록 위에 길게 세로줄을 그었다.
- (3) 규장각본과 비변사본을 대교한 결과 ‘吏’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의 기록 왼쪽에 진한 펜으로 “吏、奎章閣本備邊司本作吏。”(吏는 규장각본과 비변사본에 吏로 되어 있다)라고 적었다.
- (4) 내각문고본을 대교한 결과 ‘吏’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3)의 기록 왼쪽에 연필로 “内閣本 本文ト同ジ”(내각본은 본문과 같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내각문고본에 기입된 훈점을 본문에 옮겨 적었다.
- (5) 탁족암본을 대교한 결과 ‘吏’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4)의 기록 왼쪽에 연필로 “金沢本亦史ニ作ル”(가나자와본 또한 吏로 되어 있다)라고 적었다.
- (6) 본문에 펜으로 구두점을 표시하고, 직해문의 이두 부분에는 세로줄을 그었다.

그리고 출판한 교정본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홍문관본의 텍스트를 본문에 반영하고 대교 기록은 필요한 부분만 남겼다. 본문에 구두점과 훈점을 달고 이두 표시도 옮겼는데, 훈점의 경우 초고본에 가나로 표기한 것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나무라는 이본 조사 초기에는 홍문관본·비변사본을 각각 을해본(乙亥本)·낙안본(樂安本)이라 불렀고, 탁족암본은 가나자와본[金澤本]이라 하였다. 그리고 대교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곳에는 띠지를 붙여 표시하고 메모를 추가하였다.

초고본 제3책에 있는 다음 예를 보자. 이 사례는 앞선 판본의 글자가 나중에 새긴 판본에서 왜곡되어 간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아래 그림에 보이듯 탁족암본에 설명하게 나오는 ‘使’자가 내각문고본에는 탈획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홍문관본과 비변사본은 글자를 새기지 않고 묵등(墨等)으로 남겼으며, 규장각본은 ‘不’로 잘못 새겼다.¹⁵⁾ 초고본은 규장각본을 베낀 것이므로 ‘不’로 적었다가 나중에 저본으로 삼은 홍문관본을 보고 네모 모양으로 덧칠했다.

15) 하나무라가 보지 못한 계통인 진주판도 ‘不’로 새겨져 있다. 참고로 진주판의 해당 부분도 <그림 4>에 같이 제시한다.

초고본에 띠지 붙이기 전 기록		초고본에 띠지 붙인 후 기록		교정본		
	이본의 해당 부분					
초고본	하나무라의 이본 명칭	金澤本 濯足庵本	內閣本 內閣文庫本	乙亥本 弘文館本	樂安本 備邊司本	(없음) 奎章閣本
	이본의 계통 ¹⁶⁾	세종13년 수정판	공주판	광주판	낙안판	진주판 평양판

<그림 4> 권7 호율 창고편 다수세량곡면(多收稅糧斛面)조 (영인본 7:3□:5)

이 부분을 조사한 하나무라는 초고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겨 놓았다.

- (1) 홍문관본과 비변사본을 대교한 결과 본문의 ‘不’자가 복등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본문 위의 여백에 연한 펜으로 “及之下 / 乙亥本 / 樂安本 缺字”(及의 아

16) 이본의 계통은 장경준·진윤정, 2014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서지학연구』 58을 따른 것이다.

래 을해본과 낙안본은 결자)라고 적었다. 그리고 홍문관본을 따라 본문의 ‘不’자를 네모 모양으로 칠했다.

- (2) 규장각본을 대교한 결과 이 부분이 ‘不’자임을 확인하고, (1)의 기록 첫째줄 밑에 이어서 친한 펜으로 “及之下 有弘文館本、備邊司本”이라 적고 (1)의 기록 왼쪽으로 견너뛰어 “缺字。奎章閣本作不。”(及의 아래 홍문관본과 비변사본은 결자가 있다. 규장각본은 不로 되어 있다)라고 적었다.
- (3) 내각문고본을 대교한 결과 자형을 판별하기 힘든 글자임을 확인하고, 그 글자가 ‘丞’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2)의 기록 밑에 연필로 “丞之誤乎”(丞의 잘못인가)라고 적었다. 그리고 (1)의 기록이 가려지도록 띠지를 붙인 다음, 띠지 위에 “內閣本作 使”(내각본은 使로 되어 있다)”라고 글자 모양을 흉내내어 적었다.
- (4) 탁족암본을 대교한 결과 ‘使’자임을 확인하고, 연필로 (3)의 기록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고 “金沢本作 /使”(가나자와본은 使로 되어 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올바른 글자가 ‘使’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明白)”이라고 메모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출판한 교정본에는 본문의 글자를 ‘使’로 바꾸고 난상에 “及之下一字、弘文館本刊缺、備邊司本亦同、據內閣文庫本・灌足庵本補之、奎章閣本作不。”(及의 아래 한 글자는, 홍문관본은 많아 없어졌고, 비변사본도 똑같고, 내각문고본과 탁족암본에 의거하여 보충했으며, 규장각본은 不로 되어 있다)라는 교감기를 새로 적었다.

위의 초고본 기록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먼저 최초 기록에서 홍문관본을 ‘을해본’이라 적었다는 점이다. 대명률직해를 처음 간행한 1395년이 을해년이므로, 하나무라는 홍문관본을 원간본 계통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출판한 교정본은 초고본과 달리 홍문관본을 저본으로 하여 본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띠지의 사용이다. 초고본에는 많은 양의 띠지가 붙어 있는데, 특히 저본으로 삼은 홍문관본의 글자가 잘못된 곳에 띠지를 붙인 경우가 많다. 하나무라는 띠지를 붙인 곳 중에서 이 예처럼 홍문관본의 잘못된 글자를 바로잡을 근거가 “명백”한 경우를 선별하여 교감 결과를 교정본의 본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초고본에는 이 밖에도 이본 조사와 관련한 매우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앞으로 대명률직해의 정본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며 이 글에서는 이상의 소개에 그치기로 한다.

4. 교정본의 내용 검토

이 장에서는 하나무라가 대명률직해의 이본을 조사 연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반영된 교정본을 대상으로 저본의 선정은 타당한가, 대교 기록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기록의 형식적 측면은 문제가 없는가, 기록된 내용은 정확한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저본 선정의 타당성

하나무라가 대명률직해의 교정 작업을 시작할 때 저본으로 삼아 베끼도록 한 것은 규장각본이었다. 그리고 이후 홍문관본, 규장각본, 비변사본, 내각문고본을 차례히 대교하고 탁족암본을 부분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홍문관본을 1395년 간행된 원간본 계통으로 파악하고 교정본의 저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무라가 대교한 홍문관본은 내각문고본이나 탁족암본보다 나중에 만든 판본으로서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은 계통에 속하기 때문이다.¹⁷⁾ 이본 간의 차이를 비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판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오류의 수정 및 새로운 오류의 발생 빈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17) 하나무라가 대교한 이본은 탁족암본(세종13년 수정판) ⇒ 내각문고본(공주판) ⇒ 홍문관본(광주판) ⇒ 비변사본(낙안판) ⇒ 규장각본(평양판)의 순서로 간행이 이루어졌다(장경준·진윤정, 앞의 논문 참조).

〈표 1〉 대명률직해의 계통에 따른 내용적 차이(장경준·진윤정 2014: 559)

세종 13년 수정본 계통	세종 13년 이후 수정본 계통				
	공주판	광주판	진주판	낙안판	평양판
불일치율	10.3%(25/237)				
오류 수정	오류 발생				
6개	19개				
불일치율	38.4%(83/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개	82개				
불일치율	12%(26/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0개	16개				
불일치율	20.3%(44/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20개	24개				
불일치율	32.4%(70/216)				
오류 수정	오류 발생				
14개	56개				

위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주판에 속한 내각문고본보다 광주판에 속한 홍문관본이 더 오류가 많고, 평양판에 속한 규장각본이 가장 오류가 많다. 따라서 하나무라가 교정본을 내면서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하지 않고 홍문관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오류가 적은 내각문고본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일 수밖에 없다.¹⁸⁾

18) 하나무라는 내각문고본도 홍문관본과 같은 계통으로 보았다(교정본의 해설 참조). 한편, 규장각에는 하나무라가 보았던 홍문관본('奎5938')과 규장각본('貴1709')을 포함하여 5가지의 대명률직해가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2001년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을 내면서 대명률직해의 영인 저본으로 가장 오류가 많은 평양판 계통의 '貴1709'를 선택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었다. 만약 규장각 소장본 가운데 선본을 고른다면 광주판 계통의 '古5130-11'이 적당할 것이다. 또한 소장처와 무관하게 학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면 국내에서는 고려대 만송문고본('만송B7-A118B')을, 국외까지 포함하면 일본 내각문고본 ('漢9234')과 호사문고본('蓬左文庫103-14')을 추천할 수 있다(장경준·진윤정·허인영, 2013 「『대명률직해』의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1)」, 『국어사연구』 16: 장경준·진윤정·

2) 대교 기록의 누락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교정본에는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대교 기록이 누락된 곳이 매우 많다. 그리고 이는 하나무라가 탁족암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단지 홍문관본에서 의심나는 부분만 확인하는¹⁹⁾ 수준에서 그친 것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나무라가 대교한 5종 가운데 탁족암본은 원문의 저본이 나머지 책들과 계통을 달리하여 텍스트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교정본에는 이 차이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경준(2014)에 붙임으로 제시한 대교 항목 103개 가운데 호사문고본(탁족암본과 같은 계통)만 다르고 만송문고본(내각문고본과 같은 공주판), 규장각본(평양판), 강해, 부례가 일치하는 것이 34개가 있다.²⁰⁾ 이 항목들은 명 홍무연간에 일어난 율문의 개정을 반영하거나 이전 판본의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서, 탁족암본과 같은 계통의 책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다. 제대로 된 교감기라면 마땅히 이들을 모두 중요하게 여겨 이본에 따른 차이를 기록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정본에는 위 34개 항목 가운데 대교 기록이 있는 것이 단 1개도 없다. 하나무라가 탁족암본의 해당 부분을 꼼꼼히 보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형별 내용이 참형에서 교형으로 바뀌거나(일련번호 070, 089), “財禮 若娶者知情則追入官 不知者 則追還主”라는 문구가 추가되거나(일련번호 035), “及妻殿夫之兄

허인영, 2013 「『대명률직해』의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2)」, 『어문학』 122; 장경준·진윤정, 앞의 논문 등 참조).

- 19) 교정본의 범례에 “다만 탁족암본에 대해서는 전체에 걸쳐 자세히 대교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겨우 저본 중에 의문나는 곳에 대해서만 대교하는 데 그쳤다.”(尤も濯足庵本については全体に亘つて仔細に對校するの折を有せず、僅かに底本の疑問の個所について濯足庵本を行ひ得たに止まる。)고 밝혔다.
- 20) 장경준, 2014 「고마자와대학과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 고판본에 대하여」, 『한국어학』 64에서 제시한 자료 일련번호 005, 008, 013, 014, 016, 024, 026, 030, 031, 033, 034, 035, 039, 040, 041, 042, 043, 045, 048, 049, 050, 052, 053, 055, 057, 068, 070, 075, 077, 081, 089, 094, 095, 097 등이다.

姊各”라는 문구가 삭제되는(일련번호 081) 등 울문 내용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는 이본 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무라가 탁족암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나무라가 초고본에 남긴 기록의 정확성에 비추어 볼 때, 탁족암본의 대교를 나머지 다른 이본들과 같은 수준으로 행했다면 교정본의 기록은 지금보다 훨씬 풍성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탁족암본의 대교가 소홀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위촉받은 일의 부담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35년 후반 무렵 하나무라는 대명률직해 교정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秋官志』의 교정을 시작 해야 했고, 그래서 마지막 조사 대상인 탁족암본은 충실히 대교할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²¹⁾

위에 언급한 탁족암본을 제외하더라도 교정본에는 하나무라가 조사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기록을 빼트린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예컨대 ‘不依本方’의 ‘依’자를 오직 내각문고본만 ‘作’으로 잘못 새긴 경우가 있는데(1:50:7), 교정본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다. 하나무라가 이 부분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예는 대교자를 탓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 대교하여도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교 작업은 숙련된 여러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성의껏 조사하여 조금씩 오류를 줄여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록의 형식적 측면

교정본에서 대교·교감한 내용을 두주(頭註)의 형식으로 기록한 621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²²⁾

21)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조선총독부에서 하나무라 교수에게 교정 작업을 의뢰한 시한은 1938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秋官志』의 방대한 분량을 고려할 때 대명률직해의 교정 작업을 1936년 이후로 늦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국내에 있던 이본들만 가지고 대교를 하지 않고 일본에 건너가 대교 작업을 수행한 하나무라의 열정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할 수 있다. 『秋官志』의 교정본도 결국 예정보다 다소 늦은 1939년에 간행되었다.

첫째는 저본으로 삼은 흥문관본의 글자가 잘못되었고, 다른 이본에 그것을 바로 잡을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據○○本正之’, ‘依○○本正之’ 또는 ‘據○○本補之’라고 기록하고 본문에 교감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88개가 있다.²³⁾

둘째는 저본으로 삼은 흥문관본의 글자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교감 결과를 본문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유형은 ‘△, □之誤乎’, ‘△, □之訛乎’ 또는 ‘△字衍乎’, ‘△字脫乎’라고 기록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57 개가 있다.²⁴⁾

셋째는 단순히 이본 간의 차이를 기술하기만 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 ○○本作□’라고 기록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439개로 가장 많다. 한편 교정본 범례에 밝혔듯이 이본에 이체자(異體字)나 약자(略字)가 사용된 예는 본문을 정자(正字)로 바꾸되 이에 대한 기록은 생략하였다.

넷째는 대명률직해의 이본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주석서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하나무라는 대명률직해는 홍무22년율을 반영하고 주석서들은 홍무30년율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명률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차이를 기술해 주었다.²⁵⁾ 대교에 이용한 주석서 3종을 ‘流布本’이라 통칭하였고,²⁶⁾ 해당 사례는 모두 42개가 있다.²⁷⁾

22) 621개는 본문에 포함된 기록의 갯수이다. 총목과 목록에도 기록이 있으나 본문의 기록 유형과 차이가 없어 편의상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3) ‘據～正之’가 62개이고 ‘依～正之’가 11개인데, 둘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그리고 ‘據～補之’가 15개 있는데, 이는 저본에 글자가 없거나 자형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 표현이다.

24) ‘誤’자를 사용한 예 49개, ‘訛’자를 사용한 예 3개, ‘衍’자를 사용한 예 4개, ‘脫’자를 사용한 예 1개가 있다. ‘誤’와 ‘訛’의 의미 차이는 없고, ‘衍’은 불필요한 글자가 들어갔음을, ‘脫’은 필요한 글자가 빠졌음을 뜻한다.

25) 하나무라의 당시 일정을 고려할 때 주석서의 대교 작업은 조수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26) 대교한 책은 1723년 일본에서 간행한 훈점·주석본 『明律』, 1907년 조선에서 간행한 『大明律講解』, 1908년 중국에서 간행한 『大明律集解附例』이다(교정본 범례 참조).

이상의 네 가지 유형은 필자가 교정본의 기록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한 결과이다.²⁸⁾ 유형별로 사용된 문장의 형식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에서 교감의 근거로 다른 이본에 올바른 글자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다음 <표 2>와 같이 탁족암본에 올바른 글자가 있는데도 교감 결과를 본문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은 ‘왜 탁족암본의 글자에 근거하여 본문을 수정하지 않았는가?’하고 의문을 제기하면 답변이 궁색해질 수 있다. 앞뒤 문맥과 원문(또는 직해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탁족암본의 글자가 올바른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다른 이본들이 잘못된 경우 오직 탁족암본을 근거로 본문을 수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²⁹⁾

27) 문장 형식은 대명률직해와 주석서의 차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쓰였다. 몇 예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本條、流布本置公事失錯之次。”(이 조는 유포본에는 ‘공사실착’조 다음에 놓여 있다. 1:32 o :1)

“務要兩相情願、流布本爲註記。”(‘務要兩相情願’은 유포본에는 주석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 6:8 o :9)

“事理重者杖八十、流布本爲律本文。”(‘事理重者杖八十’은 유포본에는 율 본문으로 되어 있다. 26:5 o :8)

“役之下、流布本有歷過俸月不准之六字。”(‘役’의 아래, 유포본에는 ‘歷過俸月不准’의 6자가 있다. 12:5 o :10)

“袒免以下四十四字流布本無之。”(‘袒免’ 이하 44자는 유포본에는 없다. 20:5 o :4)

“若姦義女者加一等之八字、流布本一無之。”(‘若姦義女者加一等’의 8자는 유포본 중의 어떤 것에는 없다. 25:2 e :9)

28) 하나두라가 독자들을 위하여 범례에다 미리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29) 한 예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賞、弘文館本作實、奎章閣本·備邊司本·內閣文庫本亦同。據濯足庵本正之。”(‘賞’은 홍문관본은 ‘實’로 되어 있고, 규장각본·비변사본·내각문고본도 그렇다. 탁족암본에 의거하여 바로 잡는다. 2:4 o :3)

〈표 2〉 교정본에서 교감 결과를 본문에 반영해도 좋을 만한 사례

위치	기록 내용
1:24○:4	二年二年、二年三年之誤乎。灌足庵本作二年三年。 (‘二年二年’은 ‘二年三年’의 잘못인가. 탁족암본은 ‘二年三年’으로 되어 있다.)
1:40ㄷ:3	卽坐杖一百之下流字脫乎。灌足庵本有流字、流布本亦同。 (‘即坐杖一百’의 아래 ‘流’자가 빠졌다. 탁족암본은 ‘流’자가 있고, 유포본도 그러하다.)
3:2ㄷ:7	安、灌足庵本作案、流布本亦同。 (‘安’은 탁족암본은 ‘案’으로 되어 있고, 유포본도 그러하다.)
12:3ㄷ:5	合、答之誤乎。內閣文庫本刊、灌足庵本作答。 (‘合’은 ‘答’의 잘못인가. 내각문고본은 많아 없어졌고, 탁족암본은 ‘答’으로 되어 있다.)
24:3ㄷ:7	前、剪之誤乎。灌足庵本作剪。流布本亦作剪。 (‘前’은 ‘剪’의 잘못인가. 탁족암본은 ‘剪’으로 되어 있고, 유포본도 ‘剪’으로 되어 있다.)

셋째 유형에서는 이본에 있는 글자가 저본의 글자와 다르지만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경우와 이본의 글자가 온전히 잘못된 경우(오자, 탈자, 전도 등)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형식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쉽다. 이들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기술하였다면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셋째 유형으로 기술한 것 가운데 이체자나 약자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彌’와 ‘旣’는 이두에서 거의 구분 없이 이체자로 쓰이는 것이므로 범례에서 밝혔듯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도 66번이나 기록을 남겼다.

한편 대교에 포함한 주석서 3종을 모두 홍무30년율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流布本”이라 통칭한 것도 무리가 있었다. 주석서 가운데 『대명률강해』는 홍무30년율로 보기에도 텍스트의 차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³⁰⁾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교 기록에 “流布本作△”(유포본에는 △로 되어 있다)가 127번 나오는 데 비해 “流布

30) 정궁식·조지만, 2001 「大明律 解題」에서 제시한 대명률직해·대명률강해·대명률부례의 대교표만 보아도 대명률강해의 텍스트가 홍무30년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本一作△”(유포본 중에 어떤 것은 △로 되어 있다)도 99번이나 나오게 되었다.³¹⁾ 대교 기록에 주석서 3종을 각각 표시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4) 기록된 내용의 정확성

하나무라가 교정본에 기록한 대교·교감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권1부터 권3까지 본문에 기록된 내용 121개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결과,³²⁾ 큰 잘못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몇 군데에서 다음 <표 3>에 기술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탁족암본의 대교를 소홀히 한 결과가 눈에 띄는 정도이다. 따라서 교정본의 기록은 탁족암본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평할 수 있다.

<표 3> 교정본의 기록이 부정확한 사례(권1~권3)

위치	기록 내용	미흡한 점
1:9ㄷ:2	隣、部之誤乎、流布本亦作部。	탁족암본 판독 누락: ‘府’임
1:11ㄷ:5	依、流布本作倚。	탁족암본 판독 누락: ‘倚’임
1:18ㄷ:8	爲乎六、弘文館本作爲乎大、奎章閣本·備邊司本作爲乎矣。今據內閣文庫本正之。	탁족암본 판독 누락: ‘爲乎六’임
1:24o:4	二年二年、二年三年之誤乎、灌足庵本 作二年三年。	내각문고본 판독 오류: 탈획은 되었으나 ‘二年三年’임
1:42o:10	孫是如、奎章閣本·備邊司本作子是如。	비변사본 판독 오류: ‘孫是如’임
1:44o:1	稱、流布本作稱人人。	“人稱、流布本作稱人。”의 잘못임
2:8o:4	者三下、流布本有罪字。	“者之下、流布本有罪字。”의 잘못임
3:4ㄷ:3	信、流布本作署。	탁족암본 판독 누락: ‘書’임
3:8ㄷ:3	已只、內閣文庫本作巴只。	내각문고본 판독 불명: 정확한 자형 확인 곤란(만송본은 분명한 ‘已只’임)
3:10ㄷ:7	仔、流布本一作子。	탁족암본 판독 누락: ‘字’임

- 31) 상식 수준으로 보아도 만약 유포본 3종의 텍스트가 동일한 홍무30년을이라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99개나 나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流布本一作’의 ‘一’이 모두 『대명률강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홍무30년을 반영하는 주석서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32) 하나무라가 ‘비변사본’이라 부른 책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같은 계통(낙안판)인 대구가톨릭대 석전문고본을 이용하였다.

그 밖에 교정본의 본문에 기입된 구두점과 훈점, 이두 표시에서도 별다른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다.

5. 맷음말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널리 이용하여 온 조선총독부 중추원 간행 『교정 대명률직해』(1936)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1934~1935년에 경성제대 교수였던 하나무라가 당시 구할 수 있는 이본 5가지와 주석서 3가지를 꼼꼼히 대교하고 올바른 글자를 추정하여 밝힌 것으로서, 대체로 신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교 대상 이본 가운데 탁족암본의 대교를 소홀히 한 점은 큰 잘못이었고, 교정본의 저본으로 홍문관본을 택한 것도 최선은 아니었으며, 대교·교감한 기록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면 좋을 점들이 많이 있다. 또한 하나무라가 보지 못한 이본 가운데 최근에 별도의 계통으로 밝혀진 진주판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교정본은 대명률직해의 정본 텍스트라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특히 하나무라가 소홀히 다룬 탁족암본(세종13년 수정판) 계통과 선생이 보지 못한 진주판 계통의 이본을 포함한 정밀한 대교 작업이 기본적으로 요청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대명률직해의 새로운 정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하나무라가 남긴 업적의 훌륭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교훈으로 삼아 좀 더 나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³³⁾

논문투고일(2015. 4. 30), 심사일(2015. 5. 19), 게재확정일(2015. 6. 11)
--

33) 한편 지금까지 하나무라 개인의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는 물론, 조선총독부에서 행한 고법전 정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한 예로 『大典會通』은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1921년에 번역서 『譯文大典會通』을, 1937년에 연구서 『校註大典會通』을 간행하였으나, 해방 이후 나온 역주서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없다. 앞으로 이 방면 전문가들의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문소라, 2012 「朝鮮時代 간행의 『大明律』註釋書 板本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호, 2012 『한국법제사』, 민속원.
- 박성종, 2003, 「『大明律直解』吏讀의 예비적 고찰」, 『진단학보』 96.
- _____, 2013 「明律의 변천과 문체, 그리고 『大明律直解』의 저본」, 『국어사연구』 17.
- 박희숙, 1985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명지대 박사학위 논문.
- 법제처 편, 1964 『大明律直解』(法制資料誌 제13집), 법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엮음, 2001 『규장각소장어문학자료 어학편 해설』, 서울대학교 규장각.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2001 『大明律直解』(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 안병희, 1985 「대명률직해 이두의 연구」, 『규장각』 9.
- 안병희, 2003 「『大明律直解』의 書名」, 『한국어연구』 1.
- 장경준, 2013 「일본 내각문고와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의 서지에 관한 기초 연구」, 『어문논집』 68.
- _____, 2014 「고마자와대학과 호사문고에 소장된 『대명률직해』 고판본에 대하여」, 『한국어학』 64.
- _____, 2015 「조선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52.
- 장경준 · 진윤정, 2014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서지학연구』 58.
- 장경준 · 진윤정 · 허인영, 2013 「『대명률직해』의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1) -고려대 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6.
- _____, 2013 「『대명률직해』의 정본 확정을 위한 기초 연구(2)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충남대 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리고 일본 소케문고(宗家文庫) 소장본을 중심으로-」, 『어문학』 122.
- 장윤희, 2003 「『大明律直解』의 書誌學의 考察」, 『진단학보』 96.
- 장진번 주편(한기종 외 옮김), 2006 『중국법제사』, 소나무.
- 정근식 외 5인, 2011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정긍식 · 조지만, 2001 「大明律 解題」(서울대학교 규장각 편(2001) 所收).
- _____, 2003 「朝鮮 前期 『大明律』의 受容과 變容」, 『진단학보』 96.
- 조선총독부증주원 편, 1936, 『校訂 大明律直解』, 조선총독부증주원.
- 하나무라 요시키(花村美樹), 1936 「大明律直解 解說」(조선총독부증주원 편 所收).
- 黃彰健 편저, 1979 『明代律例彙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대만).

劉海年·楊一凡 王琨, 1994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 乙編 第一冊: 洪武法律典籍』, 科學出版社(중국 북경).

(전자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Abstract

On the Daemyengryul-Jikhae corrected by Hanamura Yosiki

Chang, Kyong-Jun

Joseon has imported Daemyengryul from Ming Dynasty, translated it with Idu in 1395, and published of the name of Daemyengryul-Jikhae. Daemyengryul-Jikhae was republished several times. The Jungchuwon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investigated the traditional laws of Joseon and requested to professor Hanamura Yosiki of Gyongsung Imperial University for comparing different versions of Daemyengryul-Jikhae and make corrections as needed. Consequently the 『Revised Edition of Daemyengryul-Jikhae』 was published in 1936.

The contents of 『Revised Edition of Daemyengryul-Jikhae』 was reliable for the most part and was recognized as canonical version. However, there were some weak points that needed to be made up; when Hanamura compared the different versions he didn't do a good job with *Takjokam* Edition, it wasn't the best decision to select *Hongmunkwan* Edition as a standard script of revised edition, and recensions and corrections were somewhat inadequate.

In conclusion, 『Revised Edition of Daemyengryul-Jikhae』 leave much to be desired as canonical version, therefore, we are in need of new corrected edition of Daemyengryul-Jikhae.

Key words : Daemyengryul-Jikhae(大明律直解), Jungchuwon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朝鮮總督府中樞院), Hanamura Yosiki(花村美樹), recension(對校), correction(校勘)